

는 시험·검사기관의 시험·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·검사기관의 시험·검사결과를 공표할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 7 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

제29조(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30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위원은 소비자보호과장, 보건위생과장, 의약과장, 대중교통2과장,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부장으로 하며, 위촉직위원은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소비자대표 2인,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업자대표 2인, 언론인·학계인사·법조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하되, 소비자대표 및 사업자대표는 각 단체로부터 복수 추천받아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소비자보호과 소비자보호계장이 된다.

제31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3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소비자보호관련 조례·규칙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사항
3. 위해 상품 등에 관한 사항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와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

4. 소비자단체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3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5조(안전제출 등) ① 위원회의 안전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간사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안전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안전을 제출한 부서·기관은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.

제36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제3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·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3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기금관리·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

제5조제1항 중 "관리·운용한다"를 "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"로 하고, 제2항을 제3항으로, 제3항을 제4항으로,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신탁기관

<p>등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약한다.</p> <p>제6조(제1항제1호) 중 “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기금심의회”)라 한다”를 “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</p> <p>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장 및 자치구 담당국장 중 3인</li> <li>2.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</li> <li>3. 식품위생에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</li> <li>4.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3인</li> <li>5.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담당 사무관이 된다.</li> </ol> <p>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며,</p> <p>제7조를 제9조로, 제8조를 제10조로, 제9조를 제11조로, 제10조를 제12조로, 제11조를 제13조로, 제12조를 제14조로, 제13조를 제15조로,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</li> <li>2.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 및 결산</li> <li>3.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</li> </ol> <p>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총 칙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거, 식</p>	<p>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영업자”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</li> <li>2. “시설개선자금”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, 개·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,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대하”라 함은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용자하는 것을 말한다.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</p> <p>제 3 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</li> <li>2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</li> <li>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</li> <li>4.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</li> </ol> <p>제 4 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</li> <li>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·조사·연구사업</li> <li>3. 식품위생교육·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</li> <li>4.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</li> <li>5.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</li> <li>6.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</li> <li>7. 기금의 관리·운영에 수반되는 부대경비</li> </ol> <p>제 5 조(기금의 관리·운영)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영한다.</p> <p>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신탁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약한다.</p> <p>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서울특</p>
--	--

<p>별시 보건사회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,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, 자치구의 경우 담당국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, 담당계장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.</p> <p>④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 <p>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·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 6 조(기금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장 및 자치구 담당국장 중 3인</li> <li>2.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</li> <li>3.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</li> <li>4.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3인</li> <li>5.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담당 사무관이 된다.</li> </ol> <p>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제 7 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</li> <li>2.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 및 결산</li> <li>3.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</li> </ol> <p>제 8 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 3 장 시설개선자금의 용자</p> <p>제 9 조(용자계획의 공고) ①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용자총액·용자한도·용자조건·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용자대상) 기금의 용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한다.</p> <p>제11조(용자신청) 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제12조(용자한도) 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,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3조(용자대상자 선정 및 용자조건 등) ①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용자조건, 용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4조(용자금 대하)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용자금의 대하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제 4 장 보 칙</p> <p>제15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---	---

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·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조례안 제2조제1항 별표 중 비고란의 “1일 3시간”을 “1일 3시간 이내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(이하 “여성발전센터”라 한다)의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사용료등) ①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등은 별표와 같다.</p> <p>② 제1항의 사용료등은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되,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후납 또는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사용료등 면제) 기술교육의 수강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, 보육료를 면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</li> <li>2.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</li> <li>3.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</li> <li>4. 7등급이하의 모자가정</li> <li>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li> </ol> <p>제4조(사용료등 반환)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5조(손해배상)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사용료 등의 징수납입) ① 소장은 사</p>	<p>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소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분의 수입징수보고서에 시금고가 발행하는 수익금월중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 [별표]의 구분란중 보육료, 기술교육 수강료, 생활문화 수강료란과 사용요율란중 부녀복지관란은 이를 삭제한다.</p> <p>[별표]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등(제2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 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료등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술교육 수 강 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인 1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 1일 3시간이내 · 주5일 기준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활문화 수 강 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인 1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 1일 3시간이내 · 주1일 기준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육 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인 1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 주5일 기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제2항중 “정신병원”을 “은평병원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부칙 중 제2항(경과조치)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구 분	단 위	사용료등	비 고	기술교육 수 강 료	1인 1월	7,000원	· 1일 3시간이내 · 주5일 기준	생활문화 수 강 료	1인 1월	7,000원	· 1일 3시간이내 · 주1일 기준	보 육 료	1인 1월	5,000원	· 주5일 기준
구 분	단 위	사용료등	비 고														
기술교육 수 강 료	1인 1월	7,000원	· 1일 3시간이내 · 주5일 기준														
생활문화 수 강 료	1인 1월	7,000원	· 1일 3시간이내 · 주1일 기준														
보 육 료	1인 1월	5,000원	· 주5일 기준														